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유순덕† · 최광돈†† · 신승중†††

요 약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서 전자상거래 초기에 우려했던 다양한 문제들 중의 일부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기술 발달의 영향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비보증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일부가 보증시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증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원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자금의 취지에 따른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출 가능한 기업의 신용등급의 완화, 소규모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운용기관에게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보증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전자 상거래, 보증제도, 기업 간 결제 시스템, 보증기금, 중소기업, 정부지원 자금

† 한세대학교 IT공학부 박사 과정, KGITG 근무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한세대학교 IT 학부 교수

논문접수 : 2011년 5월 1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 2011년 6월 2일

A stud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domestic industries

Soon-Duck Yoo† · Kwang-Don Choi† † · Seung-Jung Shin† † †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domestic industries by reviewing the definition,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in operation since 2001. Throughout the 10 year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s implement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solved many previously concerning factor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of the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system and offer means by which to expand the accessibility of the system to domestic industries and further assistance to firms already using the system. One of the primary policies supported by the research is the reallocation of funds from archaic means of exchanging finances to the modern e-commerce guaranteed financing methods because of the increased transparency of the trading. Specifically, the funding operated by government guarantee agencies requires systematic promotion, justifying subsidies and tax breaks to companies that are using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because of the increased overall transparency.

In addition, the benefits of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as a means of funding are numerous: the promotion of good business, relaxation of credit ratings for company loans, construction of the mobile operating system for small businesses, and creation of policy flexibility in operating fund agencies run by government. Future research areas include continued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above data provided and new market feedback such as direct poll surveys of the operating staff in companies using e-commerce guarantee financing agencies.

Key words : E-commerce, Guarantee System, Inter-Enterprise Payment Systems, Guarantee Funding,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Government Funding.

1. 서 론

1.1 중소기업 금융 지원정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기업운영을 위한 자본조달이다. 대체로 중소기업은 자본, 경영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조직적으로 대응이 미비하다. 기업의 업력이 짧고, 인프라 부족과 자본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높은 담보를 요구받거나 금융 제도권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이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저해 요소이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고용증대, 기술혁신 및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17][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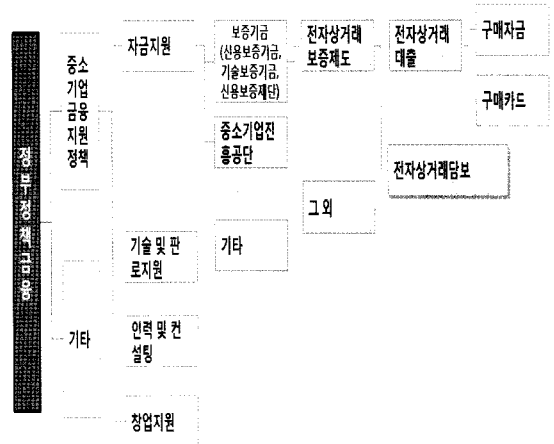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은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일반자금 대출과 달리 어떤 특정한 정책목적 가지고 특정부문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12]. 즉, 국가정책 상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정책금융(자금)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금을 특정 분야에 용자조건과 자금의 가용성 측면에서 민간 상업금융 보다 우대하여 공급하는 신용이다[3][21].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기반 저변을 구축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창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적 장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금융의 구조도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은 자금지원, 기술 및 판로지원, 인력컨설팅과 창업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자금지원 부분은 보증기관, 은행 및 기타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상품 중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보증기금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 간(B2B: Business to business) 물품 외상 구매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보증서를 수령한 은행은 전자보증금액에 대해 구매기업의 여신 계좌를 생성 후 시스템에 판매기업과의 거래내역 및 지급 정보를 입력 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판매 기업에 결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현재 시장현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생성배경과 관련된 기관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1]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정책 금융구조도

1.2 전자상거래보증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을 통해 해외의 관련 사례를 추적하였으나 적절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특화된 제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중국의 기업인 알리바바 서비스와 연결된 알리대출 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알리대출은 2007년 10월에 중국내의 중소기업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공상은행 및 중국건설은행과 합작하여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이다. 알리대출의 경우는 3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로 공동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기업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나머지 기업이 연대 보증을 통해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품이다. 이 서비스의 경우는 신용대출이라는 것과 낮은 이자 부과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와 흡사한 제도이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기업이 자금을 사용시 신용을 정부주도하에서 제공받는 형태로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제공하지만 알리대출의 경우는 민간 기업끼리 서로 신용 공여의 주체로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알리 대출의 경우 이미 20억위엔(약 3,487억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미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상기 방식도 국내에서 전문가를 통해 적용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부터는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한계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금룡(2004)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보증지점에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기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다른 자금 대비 차별성을 통해 기업이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11].

오덕신(2008)은 B2B e-MarketPlace¹⁾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이 전자상거래보증서비스를 사용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8]. 이 연구는 우수한 시스템을 통한 고객만족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김성준(2004)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통해 거래시 투명하게 운영되어 모든 거래 내역을 처리하므로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노출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세제 혜택 등 기업 지원에 다각도 노력이 필요 하다고 했다[2]. 이는 2004년도에 지적한 내용이 시장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 2011년도인 현재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김성준의 연구에서 주장한 일부 내용은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도입 초기의 상황을 반영한 내

용으로 78년이 지난 지금 그 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먼저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에 관한 필수요소 측면으로 검토를 하면 e-Marketplace의 성장성이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의 운영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우수한 45개의 e-Market Place (이하 e-MP) 사가 시장을 독점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은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재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보증 상품의 출시 초기에는 고객이 상품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품에 대한 고객 인식이 바뀌고 있고 실제 국내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립 공개형 e-MP사의 성장에 대해 한계를 지적했지만 지금은 그 우려를 벗어나 e-MP사들은 전자상거래보증 상품을 통해 확보한 회원들에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0년 후반에 e-MP 사 중 2개사가 코스타에 상장하는 성공을 이루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부족 부분에서는 지속적이고 빠른 기술 발달에 기업 환경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다. e-MP거래를 통한 신뢰부족 측면에서 언급한 것은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없다” 는 것이다. 즉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없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해도 사용 할려는 기업이 없어서 도입에 따른 성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사용하는 거래 자금을 구매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통한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기금과의 정보시스템적인 연동을 통해 모든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거래에 대한 안전성 및 e-MP 수수료 외에 다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등 원칙을 꾸준히 지켜온 덕분에 시장에서 e-MP거래에 대해 초창기에 우려했던 신뢰성은 아주 우수하게 시장에서 정착 되었다.

e-MP사업자의 부가가치 창출 실패는 보증기금이 선별한 e-MP사들끼리의 자유경쟁 시장 논리를 통해 우수한 상위 45개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중

1) e-MarketPlace (e-MP): e-MarketPlace란 용어는 Bakos(1991a)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전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가격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수 있게 하는 조직간의 정보시스템(IOS : Inter Organizational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akos, 1991). e-MP(마켓플레이스)는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된 또 다른 개념이다. 그동안 B2B 포털이나 산업별 B2B포털인 '포털' 등이 거래를 위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실거래가 일어나는 온라인 장터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코스닥에 진입하고 있어 김성준(2004)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2].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기존에 일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고 시장경쟁 논리에 부합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 하는 것이 미흡하며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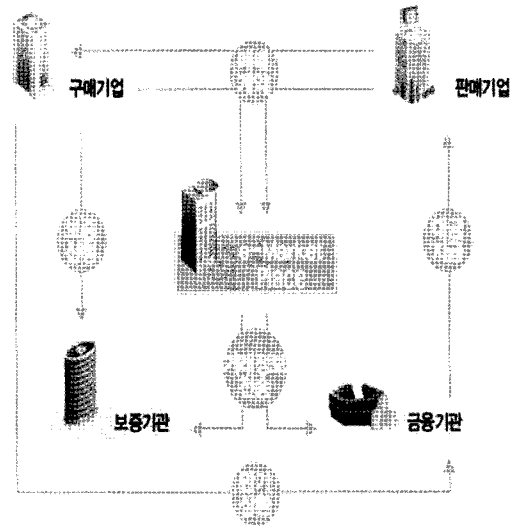
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2.1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의의 및 시스템 구조도

1974년 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의 설립·관리·운용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95호))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면서 1976년 6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출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대금(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결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어음사고에 따른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B2B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시행, 중소기업에 ‘B2B 전자결제’를 통한 원활한 자금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인터넷을 통한 기업 간(B2B) 물품 외상 구매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

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수령하고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 기업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의 기업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어음의 장점과 신용카드의 장점을 취합한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정부자금지원 인프라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기회를 확대 하고 있다[7]. 또한, 시스템에서 기업의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 뿐만 직접적인 구매 활동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의 상거래 비용 감소, 유통망 확대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본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2007년도에 기술보증기금이 채택하고 2008년도 말에는 신용보증재단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활용한 대출보증 및 담보보증 상품을 통해 기업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흐름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와 일반대출제도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대표적인 차이는 시스템을 통해 구매기업이 판매 기업에게 대금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인출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매활동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보증한도가 일반대출자금 보다 높고 법인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활용한 상품으로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으로 나누어

진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은 전자상거래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기업의 구매자금을 기업의 신용을 통해 보증기관에서 대출하여 구매기업과 판매 기업이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e-MP 전자상거래보증시스템에 등록 하면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판매 기업에 결제 되는 시스템인 전자상거래보증 제도의 생성 배경 및 상품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 일반대출과 B2B전자상거래보증상품과 차이점

구분	일반대출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활용한 대출
보증 한도	일반 보증한도 (최대 30억)	특례보증 한도(최대 100억)
이자	대출 받으면 이자를 매월 부담	이자는 구매자금만 부담 (사용분만) 구매카드와 담보보증은 이자 없음
	이자(구매자금보다 높음)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약 2% 높음	이자는 한국은행 총액대출로 [연1~1.5%월감]
차입금 여부	차입금 잡혀 차입금 비율이 높아짐	구매카드는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음
보증료	보증료 감액 없음	보증료 할인(0.1%~0.2% 등 감면)
만기 상환	대부분 연장	구매자금성으로 제한적으로 만기 연장
세액공 제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법인세, 종소세 최대 10%)
기타	자금 타용도 사용가능 (정부에서 모럴해저드 우려)	자금 타용도 전용 불가

2.2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장점

B2B 전자상거래보증의 장점을 살펴보면, B2B전자상거래보증 (B2B 구매자금대출)은 기존의 신용보증 한도 보다 최고2배 이상의 보증한도로 여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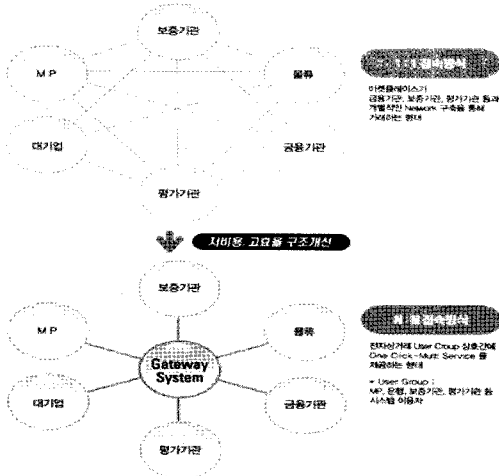
금 운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B2B전자상거래 거래액 (구매결제액)의 최고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B2B 구매자금 이용 시 구매 즉시 판매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현금 결제에 따른 구매단가인하와 거래안정성 확보함과 동시에 구매자금 한도 중 사용한 금액만큼만 이자를 지불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사용이 가능하다. 본 전자상거래 보증이 판매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기존 오프라인 담보어음보증은 어음만기 경과 전에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은 보증기한 전에도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하며 보증서 기간만료 시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반납하는 절차 불필요하다. 본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정부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중의 하나이다.

2.3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운영기관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e-MP 시스템인 마켓플레이스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은행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은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에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14].

e-MP 시스템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접속하여 거래 정보를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e-MP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를 은행 등 기관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연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참여기관 간 개별적인 정보시스템의 연결 없이 단 한 번의 정보시스템의 연결만으로 모든 기관과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즉 기존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1:1 접속방법으로 전자상거래관련 기관들이 직접 연결하는 상태여서 연동에 불편함과 개발업무가 중복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N:N 방식인 B2B 게이트웨이 방식을 보증기금이 채

택하여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그림 3] 참고.



[그림 3] 보증기관의 게이트웨이 시스템 흐름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는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인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 사업자의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 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 동력 확충에 대한 기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이 우수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보다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15].

신용보증재단은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유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3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자상거래보증을 2007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9년도에는 총 2조 4,000억원의 보증서비스 실적을 했으며, 2009년도에는 활용기업도 1만 2,000여 회사로 서비스 첫해의 1,800여 개사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5]. <표 2>의 e-MP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e-MP 사들은 총 28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는 10개 기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는 시중은행 14개사가 기업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6].

<표 2>보증기관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연동현황

보증기관	취급상품	연계 금융기관	연계 e마켓플레이스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담보 보증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외환, 우리, 제일, 하나	메탈씨닷컴, 벤처기업협회, 엠투엠네트웍, 이니시스, 이상네트웍스, 이크레더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처음앤씨, 컴에이지 외 19개사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 담보 보증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씨티, 외환, 우리, 제일, 하나	메탈씨닷컴, 벤처기업협회, 엠투엠네트웍, 이니시스, 이상네트웍스, 이크레더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처음앤씨, 컴에이지
신용보증재단	대출 보증, 담보 보증	기업, 외환, 대구, 제일	이상네트웍스, 처음앤씨, 엠투엠네트웍, 이크레더블, 벤처기업협회, 메탈씨앤씨, (주)컴에이지, 이니시스

3. 전자상거래보증시장 현황과 문제점

3.1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운용현황

2008년도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규모는 151조 원이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금액은 1조2,506억 원으로 전년동기(2007년 9월 기준) 대비 52% 급증(2008년 9월 말 기준) 하였다[20]. 또한,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42조원이고 전체 보증액 중에서 기존 보증에 대해 연장이 아닌 신규 보증공급용으로 사용한 자금은 13조 5,000억원을 달성 하였다[10].

<표 3>은 국내 대표적인 보증기금의 연도별 보증 규모에 대한 내용이다. 2005년에 책정된 금액대비 큰 폭으로 상승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에 대한 이용 고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순덕(2009)은 전자상거래보증 상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상위 20% 고객이 지급한 수수료는 72.8%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파레토 법칙(상위 20%가 전체 업무의 80%를 처리한다)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9]. 기업의 사업장 위치 및 업종과 업체와의 연관성에서 상위 5%의 업체

인 45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를 둔 업체가 전체 48%를 차지한 것을 보여주며 서울, 경기도에 다른 지방 대비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위 5% 업체의 주요 업종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샘플에 이용된 상품인 B2B 전자상거래 보증은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제품임을 입증했다. 기업의 신용도와의 상관관계에서는 B등급이 78%

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매출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신 기간은 90일로 밝혀졌다. 도소매업으로써 경기도에 위치하며, 평균 연매출이 120억 전후인 업체가 B2B전자상거래대출보증을 사용할 확률이 높으며 사용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내 보증기금 보증금액

보증 기관	보증금액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용보증기금	310,988	296,340	289,171	317,431	469,131	491,717
기술보증기금	115,013	110,278	112,459	125,935	171,448	175,204
지역신용보증재단	34,113	40,326	45,867	59,893	11,155	126,212

출처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2010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많은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통한 자금지원은 보증기금에서 자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본래 취지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굴 한다는 것에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우수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3.2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

2001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로 전자상거래보증제도가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 전자상거래보증 제도가 시장에 투명하게 정착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성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13]. 그러나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역시 운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요구사항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시장흐름에 반영되기 위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용하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3개의 기관인 정부 제도를 제공하는 지식경제부, 자금을 운용하는 보증기관과 본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받는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와 규정을 제공하는 지식경제부 역할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 감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혜택이 기업에게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은 상품 이용에 소극적으로 응대하므로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활성화 측면에는 한계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보증 상품의 경우, 혜택을 수령한 기업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 사용 내역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금대비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서는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부분은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으로는 본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정책을 활성화 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인 기업의 경우는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요청하고 있

는 게 현실이다. 또한 본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발달 가속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환경변화도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현재 기업 신용이 다소 낮지만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지원 부분에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스마트폰 시장이 보급되기 초기시기에 스마트폰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확산에 대비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을 위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여 신용 등급이 C등급으로 하락하여 본 전자상거래보증자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 기업의 경우 부품의 생산단계에서는 구매자금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의 외부자금을 활용했다. 이 기업은 현재는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전자상거래보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보증자금을 통해서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으로 사용을 꺼리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적용에 대한 유연성 부족한 규정으로 시장현상을 적극적인 반영 하는 데에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보증기관 담당자들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므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결여로 자금지원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일부사례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최근에 소셜커머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업을 운용하여 6개월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매출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20대 중반의 처음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1년 이상의 거래를 통한 재무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필요로 하는 현재의 운용방안으로는 이 기업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보증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우수한 기업위주로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취지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시장상황에서의 유연성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필요하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 보증재단 등 보증기관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기위한 담당직원이

필요하다. 영세 기업의 경우는 관련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본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기업이 보증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어렵게 여기고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정보를 알지 못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지적 하는 문제점은 일부 잘 알고 기업만 사용하고 자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진정으로 본래 목적에 필요한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자금을 기업의 생산 활동 증대가 아닌 다른 목적(예를 들면 기업이 부동산 구매 또는 주식 매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거래내역이 구매 활동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비 보증관련 자금은 기업이 생산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따라서 기업이 진정한 생산 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활용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4.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1 운전자금의 일부가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살펴보면 원자재를 우선 확보하고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운전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운전자금의 특징은 지원 자금 범위내에서(1회전만 사용가능) 사용할 수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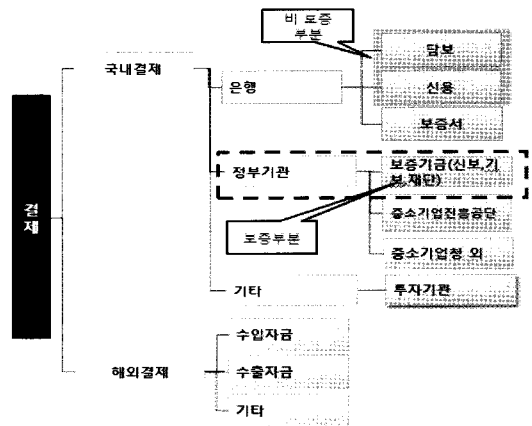
있다. 보증기금의 운전자금은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에 투입하는 B2B 보증용 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는 운전자금이 전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약 88%이며 운전자금의 경우는 자금을 사용 후 특정 여신기간 동안 상환하면 다시 한도가 발생하는 자금이 아닌 한번만 사용하는 1회 전용 자금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생산 활동을 위해 재료 비율이 매출액의 50% 수준일 경우로 고려하면 운전자금의 일부가 원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 등에 일부 사용되고 나머지 비용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구매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운전자금으로 제공되는 자금의 일부분이 B2B 전자상거래 자금으로 전환되어 이용 되어야 한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통한 자금은 운전자금과 달리 6개월 여신기간동안 기업이 다시 상환하면 한도가 발생하여 수차례 회전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전자금보다는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다 [5]. 본적으로 운전자금으로 제공되는 자금의 일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어 B2B전자상거래제도도 전환되어 기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2 비 보증부분을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상품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한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즉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가 없는 비보증 부분은 은행이 직접 기업에게 제공해 주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기업이 투명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증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으로 단계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은행이 기업에게 구매자금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는 기업의 신용, 담보, 보증서를 통하는 3가지 방식이 있다. [그림 4]는 보증시장과 비보증 시장을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경우는 우수한 신용을 보유한 기업(예 들면, A 등급 이상)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는 대출의 기본 목적이 대출이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취지가 있어 채권손실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을 근거로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도 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서 담

보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담보력이 적은 기업의 경우는 추가 담보 확보를 위해 기업에서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서 담보의 경우는 채권 손실에 대해 보증기금이 지원하므로 은행의 경우는 안전장치가 생긴 경우이다. 또한 전자결제업무를 무상으로 e-MP사가 은행 대신에 대행 해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을 은행이 직접 지불하고 있음) 여전히 이자수익은 발생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증서를 통해 구매자금을 받는 경우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한도 대비 더 많은 자금 유연성을 확보 할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유리하다. 보증기금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보증 자금 지원 취지에 맞는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 은행 및 보증기금의 취지 및 요구사항에 따라 비 보증 부분의 일부자금을 보증 상품인 전자상거래보증 자금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그림 4] 보증 시장과 비 보증 시장 분류

4.3 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적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은행이 진행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TV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진행 하므로 기업들이 은행 금융 상품에 대해 인지를 하여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자금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TV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

는 실정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증기금의 운영자금 규모대비 항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업에게 올바르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는 모든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여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 먼저 받을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보증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는 기업 고객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경우 e-MP 사들이 직접적으로 기업 고객 유치를 통한 전자 결제 수수료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기업을 방문하여 상품 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이 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상품을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4.4 법인세 감면혜택은 지속적실행이 필요하다.

은행 및 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일반 구매자금의 경우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보증 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매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자상거래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은 상시 거래내역을 e-MP 시스템에 투명하게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거래”로 세금납부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를 하는 기업보다 세금납부를 더 많이 한다.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거래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본 상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전자상거래보증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법인세 감면 법적근거: 조세특례법 7조 의 2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법]).

4.5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의 완화가 필요하다.

보증기금의 자금 운영의 기본 취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일반은행의 신용등급의 경우, A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신용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금의 경우 B등급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대비 신용 등급이 완화되어 운영하고 있다. 즉 일반은행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업체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에서 크게 자금지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신용등급이다. 본 전자상거래 보증 상품은 기업의 자금 사용에 대해 통제와 관리가 되고 있는 자금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구매 활동에 사용된다. 따라서 현재는 보증기관 마다 평가하는 신용등급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B등급 이상의 기업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 등급 다음 단계인 CCC 등급의 기업에 적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데로 보증기금 규정에서 문제가 없고 기술적 측면이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 기업의 경우 신용규제 등급 완화가 필요하다. 물론 신용 등급 기준은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다른 평가 검토된 부분과 통합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표 4> 현행 법인세 혜택

구분	상제구분	내용	
법인 (소득) 세	공제금액	세액감면 근거	조세특례법 7조 의2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법]
		B2B 구매자금	구매금액의 0.4%
	공제금액	B2B구매 카드(카드론)	여신 30일 미만 구매금액의 0.4%
		여신 60일 미만	구매금액의 0.15%
전자상 거래 설비투자S/W 포함	세액감면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24조 2항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공제금액	당해 투자금액 X 7% (대기업: 3%)	
MP수수료	세액감면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24조	
	공제금액	MP 이용수수료의 7%	

4.6 모바일 기기를 통한 B2B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IT기술의 발달로 각종 모바일 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들 수 있다. 기기의 기능 발달에 따라 모바일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도 모바일을 통해 B2B 전자상거래 전자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보증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등록해 주고 관리 할 수 있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는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 e-MP 시스템이 인터넷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구매 후 바로 자금을 결제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즉 사무실 또는 매장 등 특정한 환경에서 자금 관련 정보를 등록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관리해주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구축 시 운영자가 이동 중 또는 업무 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를 진행함으로써 원활히 구매 행위를 할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폰으로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 되고 기업 운영자가 손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되면 소규모의 기업인들이 자금을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주요 e-MP (e-Market place)사들이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4.7 정책자금 집행시기 및 연간 규모 안에서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보증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증기금이 기업 지원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것은 보증금액의 집행시기에 대한 것이다. 기업이 전 년도의 결산을 마친 시기에 해당년도의 자금 대출을 준비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년도에 대한 자금 확보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해당년도 3~5월이 되어야야 확정되는 상황에 있다. 이는 보증기금이 전

년도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용 대출을 실행 하고 법제도상 전년도의 매출 확정시기가 해당년도의 2월 25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기금의 경우도 인 사 이동 등을 통한 내부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매년 1월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료 준비를 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언급한 요인에 의해 상반기에 집행하는 자금의 수요뿐만 아니라 보증기금의 경우 3~5월에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있다. 이는 여러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풀리는 자금의 수치를 균등하게 할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견해이다. 물론, 자금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시기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연간 전체 집행예산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의 자금이 더 많이 소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수요가 더 많은 시기에 더 많이 공급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 이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비율은 주변 환경 요소에 따라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로 집행자금을 나누어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금 공급에 기본이 되는 자료(예: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는 이 제안은 부적절 할 수 있다.

보증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기업지원 자금에 대한 상반기와 하반기 집행 비율은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유연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하반기 대비 상반기에 더 많이 집행 되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기업의 요구와 자금 수요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의 자금 집행비율은 유연성 있게 보증기금이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증기금의 적절한 권한으로 남겨 두는 것을 제안한다.

4.8 채권 회수율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채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은행과 같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모든 재원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보증기관 및 보증기금의 취지는 일반 시중은행과는 달리 담보물 확보를 통한 채권 회수에 치중하

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담보를 통한 채권회수에 일반 시중은행 보다 규정에 의존하며 유연성 적용 미비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필수적으로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역량에 따라 기업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제공 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주는 취지로서 대출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우수한 채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 경영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하고 있다. 즉, 전문 경영인(고용임원)의 개념은 “본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주식합계가 5% 이내인자로 정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에서 업무 처리시 보증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 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대출된 자금을 대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가 대출 자금을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는 모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모기업은 코스닥 기업이든지 안정적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 보다 더 우수한 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우수한 모기업의 연대 보증이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기업의 대표이사 연대 보증 대신에 우수한 모기업의 연대 보증을 더 선호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내부 정해진 규정이라고 하여 해당기업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만을 채택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은 일반기업인 은행의 경우는 채무 채권회수에 강력하고 유리한 쪽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보증기금 대비 채무 손실율이 적은게 사실이다. 물론 자금을 기업에게 대출시 보증기금의 취지와는 달리 은행의 경우는 우수한 기업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여 손실율이 보증기금 대비 적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대로 보증기금 역시도 기업의 상황을 배려하며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적용을 통해 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재무채권회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문경영인 뿐만 아니라 이 기능에 대해 보다 더 유연성 있는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 경영인이라도 연대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으로서 영위할 수 없는 게 현실의 상황이다.

4.9 연체에 관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은행 등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조건 중에 연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연체가 있을 경우 용자를 제한한다. 또한 자금신청 후 예비평가 시 신청월 현재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30일 이상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2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연체기록의 용자제한 조건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 한다”는 상기 조항은 보증기관을 통해 자금 대출시 필수 조항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또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이 되는 용자금의 상환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연체 규모와 상관없이 연체의 존재 여부만을 적용함으로써 운영상 불합리함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에서 이미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서 아주 소액 연체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제한을 주지 않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액의 교통 범칙금 연체로 인하여 해당기업의 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연체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운용 방법이 필요하다. 비슷한 사례로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요청 후 인지하지 못한 아주 소액(몇 십원 규모)의 연체금액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시대 변화 및 기술 발달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현업에서 적용 시에는 요구불예금인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므로 통화성예금에 대해서는 연체금액 변제사실이 확인이 되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안을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보증 시

장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증자금의 지원 절차상의 문제 간소화 또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신용대출의 개선방안에 대해 좀더 상세히 연구하고, 현재 방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신용조사의 효율성 개선에 따라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려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표 5> 전자상거래보증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자금이용기업의 증가에 따라 지원규모자금 부족	운영자금, 비보증 부분을 전자상거래보증 자금으로 지원 확대
홍보부재로 적절한 기업 활용미비	체계적 상품 홍보 필요
한시적 법인세 감면	지속적 법인세 감면 지원
기업신용도가 낮지만 우수한 기업지원 미비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시도(예 B→CCC+)
관리직원 요구로 추가 비용발생	모바일 시스템 적용으로 사용 편리성 제공
채권회수를 하락 방안	채권회수를 유리하게 적용방안 모색
자금운영기관의 유연성부족	자금운영기관의 유연성확보

또한 서류기반 대비 상대적으로 현장중심의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보증지원의 사후 관리 및 경영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변화를 확인하는 대응체계가 요청된다. 또한 보증지원의 사후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인 중복보증 문제와 보증기관의 다원화 또는 일원화, 지원기관 및 중복자금 단일화, 소극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비효율적 정책자금 운용 체계, 효율적 신용 평가 체계 구축 등 지적된 안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5. 활성화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

모든 제도가 그러 하듯이 제도의 효율성 및 활성화 측면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관리에 따른 위험 리스크가 증가 할 수 있다. 특히 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본래의 긍정적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보증제도 효율적 방안 및 활성화

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위험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5.1 관리 인력의 증가에 따른 비용 발생

관리되는 자금이 기존 대비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해당 부분 자금을 관리하는 인력이 증가는 불가피 하다.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 및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금 집행을 위한 실사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 작업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2 리스크 관리

앞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제시했던 방안중의 하나인 신용 등급 완화를 통해 이용하는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방안을 통해 사용하는 자금의 증가에 따른 미회수 채권율이 증가 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채권회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용등급 완화의 경우는 양날의 칼과 같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일부의 채권 손실을 발생하지만 우수한 업체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한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손실에 대해서는 피 할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요로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에 대해 선행 연구와 더불어 현재 시장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현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전자상거래보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운전자금의 일부가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 상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비 보증부분을 전자

상거래 보증상품으로 사용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비보증 부분인 은행이 직접 자금을 기업에게 제공해 주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기업이 투명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증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으로 단계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적 홍보 정책을 통하여 모든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여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 먼저 받을 수 있는 환경구축을 필요로 한다. 넷째 법인세 감면혜택의 지속적 실행으로 투명한 거래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의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본 상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명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의 완화를 통해 보증기금 규정에서 문제가 없고 기술적 측면이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 기업의 경우 신용규제 등급 완화가 필요하다. 신용 등급 기준은 기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다른 평가 검토된 부분과 통합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모바일 기기를 통한 B2B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운영자가 손쉽게 처리 할 수 있게 되면 소규모의 기업인들이 자금을 보다 더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일곱째, 정책자금 집행시기 및 연간 규모 안에서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기업의 요구와 자금 수요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의 자금 집행비율은 유연성 있게 보증기관이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증기금의 적절한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을 제안한다. 여덟째, 채권 회수율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를 채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홉째, 연체에 관한 규정 완화로 연체 규모와 상관없이 연체의 존재 여부만을 적용함으로써 운영상 불합리함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에서 인지하지 못한 소액 연체의 경우는 합리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요청되고 있는 직접적인 시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물론 본 연구는 다른 제도와 연관된 다양한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규정을 검토 시 관련 다른 제도와 동시에 검토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언급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

요하며 이는 향후 연구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권오두(2010), “한국정부의 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이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주대학교.
- [2] 김성준(2004), “국내 e-Marketplace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경영학석사논문,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 [3] 김준경(1993), “정책금융의 제원조성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4] 김진국(2008),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M&A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5] 박종달(2006), “경기신용보증재단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경기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6] 백훈(2003), “중소기업정책 자금의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7] 석인수(2010),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B2B e-MarketPlace의 활성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8] 오덕신(2008), “B2B e-Marketplace에서의 전자신용보증, 서비스 만족, 재구매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9] 유순덕(2009), “B2B 전자상거래보증 환경에서의 이용고객의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 [10] 이운보(2003), “중소기업정책 자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11] 이금룡(2004). “전자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한 B2B e-Marketplace 활성화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대학원.
- [12] 임경란(2004),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재고방안 연구”, 박사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13] 진병윤(2008), “국제전자대금결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 [14] 최성호(2006), “신용보증재단의 성과평가지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연구”, 경영학 박사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15] 기술보증기금(2010), 2009년 연차 보고서.
- [16] 신용보증기금(2010), 2009년 연차보고서.
- [17] 중소기업진흥공단 홍보실(2011), 2010 중소기업지원 KEY.
- [18] 중소기업청(2010), 2010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
- [19]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관련통계.
- [20] Kaplan S and Marcia M e-Hubs(2000), The New B2B Marketplace, Harvard Business review.
- [21] Pavlou, P.A H. Liang and Y. Xue(2007),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uncertainty in on line exchange relationship: A principle agent perceptives, MIS Quarterly, Vo 131.

유 순 덕



1991 국민대학교 수학과 졸업
 1994 연세대학원 수학 (이학석사)
 1995 영국뉴카슬 대학 응용수학(석사)

1996~1998 삼성유럽본사 근무
 1999~1997 오토웍스 외 근무
 1998-KGIG 근무
 2010~현재 한세대학교 IT공학부 박사 과정
 관심분야: 전자결제, PG(Payment Gateway), 기업 지원 정부정책, RFID

Email: harry-66@hanmail.net

최 광 돈



1987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정보학과(경영학석사)
 2001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MIS전공(경영학박사)

2002~현재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 소셜커머스,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평가, ERP

E-Mail: kdchoi@hansei.ac.kr

신 승 중



1994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1999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과 정보보호전공 (정보관리학 박사)

2003년~현재 한세대학교 IT 학부 교수
 (현)한양대학교 공학 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정보처리학회 총무 부회장
 관심분야: 정보보안, 중소기업, 컴퓨팅,

E-Mail: expersin@hansei.ac.kr